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DWC)

사실 정보 자료표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이 무엇입니까?

귀하가 직장에서 다칠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다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사건. 예: 떨어져 등을 다침, 피부에 튀긴 화학 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음, 배달 중 자동차 사고로 다침.

—또는—

반복해서 작업에 노출. 예: 같은 동작의 반복 수행으로 손목을 다침, 끊임없이 시끄러운 소리로 청력 상실.

급여가 무엇입니까?

- **의료:** 귀하가 작업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귀하의 고용주가 지급
- **한시 장애 급여:** 재해나 질병에서 회복하는 동안 정상시의 일을 못해 임금을 상실할 경우에 받는 지급금
- **영구 장애 급여:** 귀하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경우 지급금
- **보충 해직 급여(부상 날짜가 2004년 이후인 경우):**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재교육이나 기술 향상을 위해 지급을 돕는 바우처
- **사망 급여:** 귀하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귀하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다른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주에게 재해를 알리기

즉시 상사에게 얘기하십시오. 재해나 질병이 (건염 또는 청력 손실처럼) 서서히 진전될 경우, 그것이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하는 즉시 보고하십시오.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급여에 대한 분쟁 해결을 돕습니다.



보상청구의 집행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응급 치료 받기

응급 상황일 경우, 즉시 응급실로 가십시오. 고용주는 귀하가 치료받을 곳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치료하는 의료진에게 귀하의 재해 또는 질병이 업무와 관련되었다고 얘기하십시오.

보상청구서 작성 및 고용주에게 제출하기

고용주는 귀하의 재해 또는 질병에 대해 알고 난 후 1 근무일 이내에 귀하에게 보상청구서(DWC 1)를 제공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이 청구서를 사용하여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급여를 신청하십시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받기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귀하의 특정 유형의 재해나 질병을 이해하는 의사가 치료해야 합니다. 의사에게 증상과 그런 증상이 생기게 했다고 생각하는 직장에서의 사건에 관해 얘기하십시오. 또한, 귀하의 일과 작업 환경을 설명하십시오.

재해 때문에 해고될까 봐 두렵습니다. 고용주가 저를 해고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재해는 업무상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고용주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또는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을 청구한 것 때문에 귀하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귀하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데는 기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캘리포니아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은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의 제공을 감독하고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급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캘리포니아 주 기관입니다.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 정보 및 지원 담당자는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시스템을 검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DWC 1 또는 기타 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료 간행물인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지침"은 www.dwc.ca.gov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1-800-736-7401번으로 전화하여 다양한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 주제에 대한 녹음된 정보를 듣거나, <http://www.dwc.ca.gov>로 접속하여 해당 지역의 정보 및 지원 담당자를 찾으십시오.

웹사이트 www.dwc.ca.gov로 접속해
근로자 산업재해보상국을 방문하거나
1-800-736-7401번으로 전화하십시오.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

1515 Clay Street, 17th Floor, Oakland, CA 94612 www.dir.ca.gov

2010년 7월